

감사원

통보(시정완료)

제 목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가신약개발재단

조 치 기 관 국가신약개발재단

내 용

1) 업무 개요

사업단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과기정통부 훈령) 제6조 제2항 등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해외 기술이전 등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관연구기관(중소·중견·대기업)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주관연구기관(영리기관)은 중소·중견·대기업의 구분에 따라 [표 9]와 같이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표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제3자 실시의 경우)

구분	징수기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정부출연금의 40%

자료: 관련 규정 재구성

그리고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기술료관리지침¹⁾」 제6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고,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사업단장이 기술료 징수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단에 이체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신약개발사업 연구과제 162건 중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인 연구과제(45건)와 징수한 정부납부기술료가 상한에 도달한 연구과제(44건)를 제외한 나머지 73건을 대상으로 주관연구기관이 해외 기술이전을 하고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사업단은 2021. 9. 24. 주식회사 ◇◇가 “━” 결과물을 □□에 기술이전하여 기술료(미화 5,000,000달러)를 징수²⁾하였는데도 사업단에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³⁾ 2022. 1. 21. 현재 정부납부기술료 119,292,085원⁴⁾

1)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8조 제2항에 기술료의 징수에 대한 세부절차는 부처승인을 받은 사업단의 기술료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

2) 2021. 8. 26. 기술이전 계약 체결

3) 사업단이 2016. 4. 1. 주식회사 ◇◇와 체결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협약서(KDDF-□)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단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에 기술실시계약 보고 누락 사유를 확인한 결과 연구과제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술료 납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답변

(정부출연금 596,460,427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사업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주식회사 ◇◇에 대해 2021. 12. 30.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전담인력을 통해 주관연구기관이 해외 기술이전 등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하고, 연 1회 사업단에서 지원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국가신약개발재단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은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2021. 12. 30. 주식회사 ◇◇에 대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4) 119,292,085원(정부납부기술료)=596,460,427원(정부출연금)×20%(중견기업 징수 상한)